

정기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에 의거 제4기 정기 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1년 3월 26일 (금) 오전 10시 00분
2. 장 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 22 부산벤처타워 606호(메드파크 회의실)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 안건 : 감사 보고, 영업 보고

나.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제4기 재무제표 승인의 件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件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件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件

4.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본인 참석시 : 신분증, 인감도장

나. 대리 행사시 : 위임장 1부,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의 신분증

※ 별첨 : 위임장 1부 끝.

2021년 03월 11일

주식회사 메드파크

대 표 이 사 박정복 (직인생략)

정기 주주총회 안건

제1호 의안 : 제4기 재무제표 승인의 件

※ 총회 당일 배부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件

※ 별첨 참조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件

구 분	전 기	당 기
보수 한도액	5 억원	8 억원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件

구 분	전 기	당 기
보수 한도액	1억	1억

[별첨]

제 1 장 총칙	제 1 장 총칙
<p>제 1 조(상호) 본 회사는 "주식회사 메드파크"라 한다. 영문으로는 MedPark Co.,Ltd.(약호 MedPark)라 표기한다.</p>	<p>좌동</p>
<p>제 2 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용구, 의료용재료 제조 및 판매업 1. 기계부품, 제조 및 판매업 1. 의료용구, 의료용재료 및 의약품 도소매업 1. 기계부품, 도소매업 1. 의료용구, 의료용재료 무역업 및 무역대행업 1. 기계부품, 무역업 및 무역대행업 1.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임대, 유지보수 및 서비스업 1. 데이터베이스 정보처리 및 정보제공업 1. 인터넷 콘텐츠 개발 및 인터넷 사업 1. 의료용 컴퓨터설비 및 사무용기기 도소매업 1. 정보통신 및 부가통신 서비스업 1. 의료기관 정보기술 및 경영컨설팅업 1. 도서출판, 정기간행물 발행 및 유통업 1. 의료기술 교육서비스업 1.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1. 의료관련 자금지원 및 알선업 1. 부동산임대업 1. 주택건축업, 실내.외 건축업 1. 의료용구 렌탈업 1. 의료용구 임가공업 1. 민간자격 발급 및 운영관리 1. 실내.외 인테리어업 1. 의료용구 연구개발업 1. 덴탈마스크 제조업 1.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및 전자상거래업 1.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p>제 2 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용구, 의료용재료 제조 및 판매업 1. 기계부품, 제조 및 판매업 1. 의료용구, 의료용재료 및 의약품 도소매업 1. 기계부품, 도소매업 1. 의료용구, 의료용재료 무역업 및 무역대행업 1. 기계부품, 무역업 및 무역대행업 1.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임대, 유지보수 및 서비스업 1. 데이터베이스 정보처리 및 정보제공업 1. 인터넷 콘텐츠 개발 및 인터넷 사업 1. 의료용 컴퓨터설비 및 사무용기기 도소매업 1. 정보통신 및 부가통신 서비스업 1. 의료기관 정보기술 및 경영컨설팅업 1. 도서출판, 정기간행물 발행 및 유통업 1. 의료기술 교육서비스업 1.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1. 의료관련 자금지원 및 알선업 1. 부동산임대업 1. 주택건축업, 실내.외 건축업 1. 의료용구 렌탈업 1. 의료용구 임가공업 1. 민간자격 발급 및 운영관리 1. 실내.외 인테리어업 1. 의료용구 연구개발업 1. 덴탈마스크 제조업 1.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및 전자상거래업 1.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p>제 3 조(본점의 소재지) 본 회사의 본점은 부산광역시내에 둔다. 단, 이사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p>	<p>좌동</p>
<p>제 4 조(광고방법) 본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medpark.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p>	<p>좌동</p>
제 2 장 주식	제 2 장 주식
<p>제 5 조(발행예정주식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50,000,000 주로 한다.</p>	<p>좌동</p>
<p>제 6 조(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 원으로 한다.</p>	<p>좌동</p>
<p>제 7 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0 주(1주의 금액 500 원 기준)로 한다.</p>	<p>좌동</p>

<p>제 8 조(주권의 종류) 본 회사의 주권은 1 주권, 5 주권, 10 주권, 50 주권, 100 주권, 500 주권, 1,000 주권 및 10,000 주권의 8 종류로 한다.</p>	<p>제 8 조(주권의 종류) 본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은 삭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 8 조 2(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 9 조(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좌동</p>
<p>제 9 조의 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 보통주에 우선권이 있으며, 의결권은 없는 것으로 하되, 의결권에 대해서는 이를 발행하는 이사회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제 5 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한다. ③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 범위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④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 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 당해 유상증자를 결의하는 이사회가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배정하며,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신주의 배정은 그와 같은 우선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⑦ 회사가 발행하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전부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전환비율, 전환조건에 관하여는 이를 발행하는 이사회가 결정하되 전환 전 우선주식의 총 발행금액과 전환 후 보통주식 발행액 총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전환청구기간은 우선주식 발행 의일부터 10 년 내의 범위에서 이를 발행하는 이사회가 정한다. ⑧ 회사가 발행하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전부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할 수 있는 상환권을 부여할 수 있다. 상환가액 및 상환 기간에 대하여는 당해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⑨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2 조의 신주의 배당기산일에 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좌동</p>

제 10 조(신주인수권)

-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 542 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5. 근로복지기본법 제 39 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및 법인, 개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 418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10 조의 2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상장시 대표주관회사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
- ③ 제 2 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좌동

제 11 조(주식매수선택권)

-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 542 조의 3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추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 ②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 30 조 제 1 항 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11 조의 3 제 5 항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 ④ 제 3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 3 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

좌동

<p>당하게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p> <p>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p> <p>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p>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 차액의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p>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 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할 날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 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가 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 12 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p>	<p>제 12 조(신주의 동등배당) ①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그 배당기준일까지 발행한 신주에 대하여는 배당하지 아니한다.</p>
<p>제 13 조(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p>	<p>좌동</p>
<p>제 14 조(주권의 명의개서 등)</p> <p>①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상속, 유증 기타 계약사유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 및 취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본 회사는 주주명부의 기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명의개서 대리인을 둘 수 있다. 명의개서 대리인은 이사의 결의에 선정한다.</p>	<p>제 14 조(명의개서대리인)</p> <p>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 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p>

<p>제 15 조(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 본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본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 등록 또는 표시의 말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도 같다.</p>	<p>제 15 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삭제한다.</p>
<p>제 16 조(주권의 재발행) ① 주권의 분할 병합 오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본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구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그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본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제권판결의 정보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p>제 16조(주주명부)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p>
<p>제 17 조(수수료) 제 10 조 내지 제 14 조에서 정하는 청구를 하는 자는 본 회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제 18 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제 17 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 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 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제 19 조(주주의 주소 등의 신고) 본 회사의 주주 및 등록된 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본 회사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그의 성명, 주소와 인감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제 3 장 사 채</p>	<p>제 3 장 사채</p>
<p>제 20 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제 18 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3. 사채의 액면총액이 5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p> <p>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모집 이외의 방법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 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 12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3. 사채의 액면총액이 5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p> <p>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모집 이외의 방법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 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 21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p> <p>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3. 사채의 액면총액이 5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 자본채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p> <p>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p> <p>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월(모집 이외의 방법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 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 12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 19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좌동</p>
<p>제 22 조(사채 발행의 위임)</p> <p>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p>	<p>제20조 좌동</p>
<p>제 23 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p> <p>이 정관에서 정한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주주의 성명 및 인감신고 등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p>	<p>제 21 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p> <p>제 14 조(명의개서대리인), 제 15 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제 15 조 준용규정은 삭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 21 조의 2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4 조 및 제 15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제 15 조 준용규정은 삭제한다.</p>

제 4 장 주주총회	제 4 장 주주총회
<p>제 24 조(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p>	<p>제22조(소집시기) 회사는 매 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p>
<p>제 25 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정관 제 38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3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정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 26 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회 후보자 또는 감사 후보자의 성명, 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 542 조의 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점, 명익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 24 조(소집통지 및 공고) 좌동</p>
<p>제 27 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p>	<p>제 25 조(소집지) 좌동</p>
<p>제 28 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 38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 26 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 29 조(의장의 질서유지권 등)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기 위한 발언, 기타 유형력의 행사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 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p>	<p>제 27 조(의장의 질서유지권 등) 좌동</p>
<p>제 30 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p>	<p>제 28 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좌동</p>

<p>제31조(의결권등) ①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9조(의결권등) 좌동</p>
<p>제 32 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p>	<p>제 30 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좌동</p>
<p>제 33 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 31 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좌동</p>
<p>제 34 조(주주총회의 의사록)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p>	<p>제 32 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제 5 장 이사 · 이사회 · 대표이사</p>	<p style="text-align: center;">제 5 장 이사 · 이사회 · 대표이사</p>
<p>제 1 절 이사</p>	<p>제 1 절 이사</p>
<p>제 35 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이사를 둔다. 이 중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 둘 수 있다.</p>	<p>제 33 조(이사의 수) 좌동</p>
<p>제36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 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 34조(이사의 선임) 좌동</p>
<p>제37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p>제 35조(이사의 임기) 좌동</p>
<p>제 38 조(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 36 조(이사의 직무) 좌동</p>

<p>제39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p>	<p>제37조(이사의 의무) 좌동</p>
<p>제 40 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p>	<p>제 38 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좌동</p>
<p>제 2 절 이사회</p>	<p>제 2 절 이사회</p>
<p>제 41 조(이사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 2 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의장은 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p>	<p>제 39 조(이사의 구성과 소집) 좌동</p>
<p>제 42 조(이사회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제 40 조(이사회 결의방법) 좌동</p>
<p>제 43 조(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	<p>제 41 조(이사회 의사록) 좌동</p>
<p>제 44 조(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p>	<p>제 42 조(상담역 및 고문) 좌동</p>
<p>제 3 절 대표이사</p>	<p>제 3 절 대표이사</p>
<p>제 45 조(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p>	<p>제 43 조(대표이사의 선임) 좌동</p>
	<p>제43조의2(위원회) ① 본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p>

	<p>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사위원회 2. 내부거래위원회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p>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의 결의로 정한다.</p> <p>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41 조 내지 제 4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 46 조(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총괄한다. 업무를</p>	<p>제 44 조(대표이사의 직무) 좌동</p>
<p>제 6 장 감 사</p>	<p>제 6 장 감 사</p>
<p>제47조(감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본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 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p>제45조(감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본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하며,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 368 조의 4제 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 3항·제 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p>제48조(감사의 임기와 보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7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p>제46조(감사의 임기와 보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p>제49조(감사의 직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제39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p>제47조(감사의 직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제3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p>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p> <p>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p> <p>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제 50 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p>	<p>제 48 조(감사록) 좌동</p>
<p>제 51 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 40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p>	<p>제 49 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좌동</p>
<p>제 7 장 회 계</p>	<p>제 7 장 회 계</p>
<p>제 52 조(사업연도) 본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제 50 조(사업연도) 본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제 53 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는 상법 제 447 조 및 제 447 조의 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 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 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상법 제 447 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 447 조의 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p>	<p>제 51 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는 상법 제 447 조 및 제 447 조의 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 1항의 서류를 감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 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상법 제 447 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 447 조의 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p>
<p>제 54 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p>	<p>제 52 조(외부감사인의 선임) 좌동</p>
<p>제 55 조(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p>	<p>제 53 조(이익금의 처분) 좌동</p>
<p>제 56 조(이익 배당)</p>	<p>제 54 조(이익배당)</p>

<p>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p> <p>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p> <p>③ 제 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p> <p>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p>	<p>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p> <p>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p> <p>③ 제 1항의 배당은 이사회결의로 정하는 배당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p> <p>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p>
<p>제 57 조(중간배당)</p> <p>① 회사는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들에게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p> <p>② 제 1항에 명시된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정한다.</p> <p>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상법 시행령 제 19 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p>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중간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중간배당 기준일 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최근 중간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p> <p>⑤ 제 9 조의 종류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p>	<p>제 55 조(중간배당)</p> <p>① 회사는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들에게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p> <p>② 제 1항에 명시된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정한다.</p> <p>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상법 시행령 제 19 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p>④ 제 1항의 중간배당은 중간배당 기준일 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한다.</p> <p>⑤ 제 9 조의 종류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p>
<p>제 58 조(배당금지청구권 소멸시효) 배당금지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p>	<p>제 56 조(배당금지청구권 소멸시효) 좌동</p>
부 칙	부 칙
<p>제 59 조(준용 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및 기타 법령과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르며,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조항은 회사의 주식시장 상장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p>	<p>제 1 조(준용 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및 기타 법령과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다만,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조항은 회사의 주식시장 상장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제 8 조, 제 8 조의 2, 제 14 조 3 항, 제 15 조, 제 16 조, 제 21 조, 제 21 조의 2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제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는 날부터 시행 한다.</p>

위임장

본인은 2021년 03월 26일에 개최하는 (주)메드파크의 정기 주주총회(그 속회 또는 연회 포함)에서 _____을(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아래와 같이 찬반 표시에 따라 본인의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 음 -

1.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1년 03월 26일(월) 오전 10시
- 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 22 부산벤처타워 606호(메드파크 회의실)

2. 의결권 위임 내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유주식수		위임한 주식수	

- 본란에 주식수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의 주주명부상의 소유주식수 전량을 기재한 것으로 간주함.

3. 의결권 행사의 내용

부의 안건	찬성	반대
제1호 의안 : 제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각 의안에 찬성란 또는 반대란 중 한 곳에만 ○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수정안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위임

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상정되는 경우 등에는 대리인이 상기 의결권 행사 내용에서 표시한 찬반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의결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의안에 대한 찬성, 반대 표시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백지 위임장은 해당 의안의 표결에 있어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인감증명서

2021 년 월 일

주 주 명 : (인감날인)
주 소 :
연 락 처 :

위 임 장

수
임
인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 사무소에서
다음 사서증서의 인증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단, 쌍방대리 및 자기와의 계약을 승락함.

다
음

2021년 월 일

위 임 인

성 명
주 소

법인
인감

위 임 인

성 명
주 소

인감